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위원장
람	

제 17 호
2026. 9. 11.(금)

차 례

공 고

○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8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 공고

— 1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해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9. 1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8.까지(15일간)
3. 공고대상 : 4대

구분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명령(해제)일	사유
해제	703하2352	스타리아 (STARIA)	KMJYB371BSU235684	2026. 08. 28.	소유자신청
등록	152오3078	G90	KMTFA41DDNU001330	2026. 09. 03.	소유자신청
해제	331도9544	G80	KMTGC41DDMU060780	2026. 09. 04.	소유자신청
해제	152오3078	G90	KMTFA41DDNU001330	2026. 09. 10.	소유자신청

4. 공고사항

-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해제)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
-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2-726-6821)